제4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917

2021년 11월 25일
보건복지위원회

Ⅰ. 심사경과

1. **제출일자 및 제출자** : 2021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장

2. **회부일자** : 2021년 10월 20일

3. **상정일자** : 제303회 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1년 11월 25일 상정· 의결(원안 가결)】

Ⅱ. 제안설명의 요지 (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)

1. 제안이유

○ 제4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남권 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구로구에 설치 예정인 거점형 키움센터로 지역 내 중소규모의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기능을 보완하여,

모든 아동들에게 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한 문·예·체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돌봄 자원을

체계적으로 연계·활용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하여 초등돌봄의 질을 견인하고자 운영하는 시설임.

○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흥미롭고 창의적인 돌봄 콘텐츠를 기획·운영하고, 지역내 아이돌봄 기관·자원의 수평적 연계망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센터 운영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1) 위탁사무명 : 제4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

2) 위탁유형 : 시설위탁

3) 위탁기간 : 5년(2022.10. ~ 2027.10.)

4)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1,000㎡ 이상 규모의 사회복지시설로 10~20명 수준의 운영·인력관리 및 초등학생 대상 문화·놀이·예술 체험 프로그램 기획·운영,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등 거점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이

고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

- 이에, 지역사회와 수평적 연계를 통해 아이돌봄 협력망을 구축하고, 다양한 인적·물적 자원의 체계적인 연계·매칭을 수행하기 위한 축적된 현장경험 및 전문성 있는 민간 자원 활용이 필요함

5) 위탁사무 : 제4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
○ 제4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○ 제4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관리 및 시설·물품 관리
○ 제4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
○ 제4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서비스 기획 및 운영
○ 제4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
○ 권역 내 아이돌봄 자원 연계 및 인적·물적 연계기반 마련
○ 권역 내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
○ 권역 내 아이돌봄 관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
○ 권역 내 중소 아이돌봄시설 서비스 개선 및 이용 지원
○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서울시 초등돌봄사업 추진 관련 업무 협조

6) 위탁시설 개요

○ 소 재 지 : 서울 구로구 오류동 68-35
○ 규　　모 : 지하 1층~지상 8층 / 면적 999.15㎡
○ 준 공 일 : 2022.11월(예정)
○ 공간구성(안)

구 분		공 간 용 도	면적(㎡)	세부 용도내용
지상	8층	**사무운영공간**	37.43	사무공간(휴게공간)
	7층	**사무공간, 상담공간**	148.39	사무공간, 회의실, 상담공간
	6층	**다목적 공간**	148.39	다목적 강당(전시, 공연, 체육, 교육 등 부속실
	5층	**PBL 공간**	144.75	PBL실(요리), 쉼 공간(정적 공간)
	4층	**PBL 공간**	144.75	PBL실(크리에이터), 놀이 공간(동적 공간)
	3층	**PBL 공간**	144.75	PBL실(요리), 쉼 공간(정적 공간)
	2층	**놀이공간**	92.27	열린 놀이공간(동적 공간)
	1층	**안내, 휴식공간**	138.42 (주차장 48.64)	안내, 놀이 및 휴식공간
지하	1층	**주차장**	61.52 (연면적 제외)	주차공간, 저수조

○ 조직운영(안) : 4팀, 13명(정원)

센터장(1)
운영총괄

행정운영팀(4명)
-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- 조직, 인사, 예산·결산, 지출, 총무 -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 - 전기·통신·기계 시설물 유지보수, 차량운행

돌봄기획팀(3명)
- 콘텐츠 기획, 개발 총괄 - 문·예·체 창의체험활동 기획, 개발 - 지역돌봄기관, 지역주민 지원콘텐츠 기획, 개발 - 긴급돌봄 등 특화돌봄 기획

돌봄운영팀(3명)
- 문화·예술·체육, 놀이중심 체험활동 운영 - 지역주민 대상 활동 운영 - 긴급돌봄 등 특화돌봄 운영

돌봄연계팀(2명)
-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- 돌봄자원(인적·물적) 연계 및 인프라 구축 - 중소규모 키움센터 교육지원

7) 수탁기간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8) '22년 소요예산(안) : 193백만원(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
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

제7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, 위탁기간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.

○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9. 6. 12.>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 3.>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8. 3.>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나. 예산조치 : 2022년 예산반영 예정

다. 합　　의

○ '21년 제8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: '21.10.6.(적정)

라. 기　　타 : 해당사항 없음.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동의안 제출 경위 및 사무의 내용

○ 본 동의안은 '제4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'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[1]에 따라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,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임.

○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- 센터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- 센터 종사자 관리 및 시설·물품 관리
- 센터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
- 센터 돌봄서비스 기획 및 운영
- 센터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
- 권역 내 아이돌봄 자원 연계 및 인적·물적 연계기반 마련
- 권역 내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
- 권역 내 아이돌봄 관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
- 권역 내 중소 아이돌봄시설 서비스 개선 및 이용 지원
-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서울시 초등돌봄사업 추진 관련 업무 협조

1) **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**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21. 3. 25.>

2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 개요

○ 거점형 키움센터(이하 “거점센터”라 함)’는 「아동복지법」제44조의2[2] 및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6조제1항제5호[3]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아동 대상 돌봄 시설의 하나로 일반형 및 융합형 키움센터와 연계한 특화 예술 프로그램 제공, 주말·저녁시간 등에 틈새·긴급돌봄 공급 및 지역 내 돌봄 거점으로서, 중·소규모 돌봄기관의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.

<키움센터 유형별 기능 및 역할>

		(국시비 매칭, 3:7)	(국시비 매칭, 서울形 보완모델)	
		일반형 키움센터	융합형 키움센터	거점형 키움센터
기능 및 역 할		• 집·학교 인근 10분 거리 설치 • 방과후 초등 틈새 돌봄 제공	• 저녁(석식), 주말(토) 돌봄 • 마을단위 돌봄 네트워크 운영	• 문화예술체육 등 특화서비스 제공 • 돌봄공간 및 마을돌봄자원 지원
면 적		66㎡ 이상 (小규모, 구립)	210㎡ 이상 (中규모, 구립)	1,000㎡ 이상 (大규모, 시립)

○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현재 제1호 노원, 제2호 동작, 제3호 종로 총 3곳이 운영 중에 있으며, 추가 확충 중인 제4호 거점형 우리동네키

---

2) **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** ① **시·도지사**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**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**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3) **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돌봄 지원 사업)** ① 시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,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

5. 시의 공공시설 등 공간을 활용하여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 대상 방과후 돌봄,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프로그램의 제공 등 초등돌봄 사업

움센터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<제4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현황>

시 설 명	제4호 거점형 키움센터
소 재 지	구로구 오류동 68-35
규 모	지하 1층~지상 8층 / 연면적 999.15㎡
준 공 예 정 일	2022.11월(예정)
위 탁 사 무	제4호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전반
위 탁 기 간	2022.10월 ~ 2027.10월(5년간)
조 직 운 영 (안)	4팀, 13명 (센터장 1, 종사자 12)
'22년 예산(안)	민간위탁사업비 : 20백만원(기자재비)
수 탁 체 선 정	공개모집

3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

○ 「지방자치법」[4]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「아동복지법」제44조의2[5] 및 「서울특별시 온

4) **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**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**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**

5) **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**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**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**

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7조제1항[6]에 시장이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바, 방과후 초등돌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동 거점센터의 운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으며,

○ 「민간위탁조례」제4조[7]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"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"를 법인·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

- 문화·예술·체육 전문 프로그램 제공 및 부모 상담, 일반형·융합형 센터를 포함한 돌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특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에 함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점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.

○ 또한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7조제3항[8]에

---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6) **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** 제7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7) **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**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**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**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삭제

8) **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** 제7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) ③ 시장은 돌봄시설

서 돌봄시설을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,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.

4 종합 검토 의견

○ 금번 시장이 제출한 위탁사무에 대한 동의안은 초등 방과후 돌봄 시설 중 문화·예술·체육 전문 프로그램 제공 및 부모 상담, 일반형·융합형 센터를 포함한 돌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특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,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에 기반 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.

○ 이에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법적인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할 것임.

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Ⅴ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Ⅵ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Ⅶ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제4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2917

제출년월일 : 2021년 10월 15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제4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남권 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구로구에 설치 예정인 거점형 키움센터로 지역 내 중소규모의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기능을 보완하여,

모든 아동들에게 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한 문·예·체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돌봄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·활용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하여 초등돌봄의 질을 견인하고자 운영하는 시설임.

나.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흥미롭고 창의적인 돌봄 콘텐츠를 기획·운영하고, 지역내 아이돌봄 기관·자원의 수평적 연계망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센터 운영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제4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

나. 위탁유형 : 시설위탁

다. 위탁기간 : 5년(2022.10. ~ 2027.10.)

라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1,000㎡ 이상 규모의 사회복지시설로 10~20명 수준의 운영·인력관리 및 초등학생 대상 문화·놀이·예술 체험 프로그램 기획·운영,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등 거점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
- 이에, 지역사회와 수평적 연계를 통해 아이돌봄 협력망을 구축하고, 다양한 인적·물적 자원의 체계적인 연계·매칭을 수행하기 위한 축적된 현장경험 및 전문성 있는 민간자원 활용이 필요함

마. 위탁사무 : 제4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
○ 제4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
○ 제4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관리 및 시설·물품 관리

○ 제4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

○ 제4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서비스 기획 및 운영

○ 제4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

○ 권역 내 아이돌봄 자원 연계 및 인적·물적 연계기반 마련

○ 권역 내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

○ 권역 내 아이돌봄 관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

○ 권역 내 중소 아이돌봄시설 서비스 개선 및 이용 지원

○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서울시 초등돌봄사업 추진 관련 업무 협조

바. 위탁시설 개요

○ 소 재 지 : 서울 구로구 오류동 68-35

○ 규　　모 : 지하 1층~지상 8층 / 면적 999.15㎡

○ 준 공 일 : 2022.11월(예정)

○ 공간구성(안)

구 분		공 간 용 도	면적(㎡)	세부 용도내용
지상	8층	**사무운영공간**	37.43	사무공간(휴게공간)
	7층	**사무공간, 상담공간**	148.39	사무공간, 회의실, 상담공간
	6층	**다목적 공간**	148.39	다목적 강당(전시, 공연, 체육, 교육 등 부속실
	5층	**PBL 공간**	144.75	PBL실(요리), 쉼 공간(정적 공간)
	4층	**PBL 공간**	144.75	PBL실(크리에이터), 놀이 공간(동적 공간)
	3층	**PBL 공간**	144.75	PBL실(요리), 쉼 공간(정적 공간)
	2층	**놀이공간**	92.27	열린 놀이공간(동적 공간)
	1층	**안내, 휴식공간**	138.42 (주차장 48.64)	안내, 놀이 및 휴식공간
지하	1층	**주차장**	61.52 (연면적 제외)	주차공간, 저수조

○ 조직운영(안) : 4팀, 13명(정원)

센터장(1)
운영총괄

행정운영팀(4명)
-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- 조직, 인사, 예산·결산, 지출, 총무 -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 - 전기·통신·기계 시설물 유지보수, 차량운행

돌봄기획팀(3명)
- 콘텐츠 기획, 개발 총괄 - 문·예·체 창의체험활동 기획, 개발 - 지역돌봄기관, 지역주민 지원콘텐츠 기획, 개발 - 긴급돌봄 등 특화돌봄 기획

돌봄운영팀(3명)
- 문화·예술·체육, 놀이중심 체험활동 운영 - 지역주민 대상 활동 운영 - 긴급돌봄 등 특화돌봄 운영

돌봄연계팀(2명)
-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- 돌봄자원(인적·물적) 연계 및 인프라 구축 - 중소규모 키움센터 교육지원

사.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아. '22년 소요예산(안) : 193백만원(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
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

제7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, 위탁기간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.

○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9. 6. 12.>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 3.>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8. 3.>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나. 예산조치 : 2022년 예산반영 예정

다. 합　　의

○ ’21년 제8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: ’21.10.6.(적정)

라. 기　　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심주현(☎ 2133-9511)